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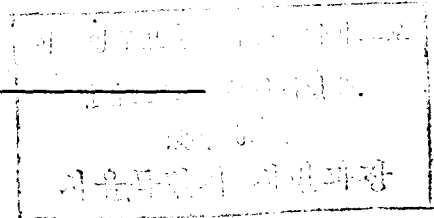
제 318 호

1972. 11. 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보

차 례



◎ 공 고

제 259 호	환지계획변경 공고.....	3
제 263 호	도시계획사업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시행허가	3
제 264 호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4
제 266 호	소공채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	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59 호

환지계획변경공고

- 1. 당시가 시행중인 영동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하고져 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2 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미 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2. 11. 17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63 호

도시계획사업 (유류 저장장 및 송유설비시설) 시행허가

도시계획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사업시행 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무하여 허가하였기 공고한다.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청 지역계획과 및 경기도 시흥군청과 사업시행자인 대한

석유공사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 11. 18.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시행지 : 경기도시흥군파천면주암리산 13 의 1 의 5 필지
- 2. 사업의종류 : 유류 저장장 및 송유설비, 시설사업
명칭 : 대한석유공사서울유류저장소 시설공사
-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구충무로 2 의 주소 가 64-5
성명 : 대한석유공사 대표 박 원 석
- 4. 사업의착수 : 인가후 1 주일 이내
준공 : 73. 12. 31.

5. 조 건

가.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2 개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 78 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

라.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이를 즉각 복구하고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 (1) 불의의 사고 (저유탱크폭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 (2) 임야훼손으로 인한 저지대 농경지의 토사폐출
- (3) 저유의 누수로 인한 식수오염
- (4) 형질·변경 및 절개지 부분에 대한 조정사업 실시

라. 이 사업 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이 허가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 업 개 요

◎ 서울특별시공고제 264 호

- 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
1. 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인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사업시행 인가 신청전 서울특별시 공고 제230호 (71. 11. 9)로 계획 공람 공고한 지역중 일부는 개발제한 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관계로 제척되었으며,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사 업 명	시행면적	시행지구	시행기간	시행자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595,053 (785,000) 평	성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각 일부	1972. 11. 6 1975. 12. 31	서울특별시

1972. 11. 2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66 호

소공재개발사업지구실시계획공람공고

1. 1971. 4. 1자 건설부고시 제 169호에 의거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

된 소공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33 조에 의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가수용계획, 시행기간 및 동법 시행령 제 29 조에 의한 계획을 별첨도서와 같이 수립하고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
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하오
니 관계인은 본 지구사업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별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관계
인에게 별도 통지하겠으나 미수령되
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2. 11. 22.

서울특별시 장